의안번호	제 318 호
의 결	2023년 월 일
연월일	(제 회)

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임영은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3년 5월 31일

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임영은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18 발의연월일 : 2023년 5월 31일

발 의 자 : 임영은, 노금식, 최정훈,

김성대, 오영탁, 이옥규,

이태훈

1. 개정 이유

○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이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- O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전부개정에 따른 용어 및 적용조항 정비
- 정보화 관련 용어를 상위법의 정의를 따르도록 함(안 제2조)
- 정보화위원회 위원 범위 조정(안 제6조제3항)
- 정보화책임관 업무로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제8조에 따른 정보화 책임관의 역할 및 업무를 추가(안 제7조제1항)
- O 정보화 발전 유공자의 포상 근거조항을 신설함(안 제19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, 「전자정부법」

나. 관련부서 협의 : 행정국 정보통신과와 협의함.

다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첨부 제외 사유서

라. 조례안예고 : 2023. 6. 2. ~ 2023. 6. 7.(5일간)

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"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조례"를 "충청북도 정보화 조례"로 한다.

제1조 중 "지역정보화"를 "정보화"로, "위하여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"을 "위하여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및 「전자정부법」"으로, "규정함"을 "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"으로 한다.

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"노령자 등을"을 "고령자, 북한이탈주민, 결혼이민자 등으로서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자 를"로 한다.

3. "정보화"란 정보를 생산·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의 제목 "(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)"을 "(기본원칙)"으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지역정보화"를 "정보화"로 한다.

제2장의 제목 "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"를 "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"로 한다.

제4조의 제목 "(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)"을 "(기본계획의 수립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지역정보화를 효율적"을 "「전자정부법」 제5조 의2에 따라 도의 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"으로, "지역정보화기본계획" 을 "정보화 기본계획"으로, "지역정보화위원회"를 "정보화위원회"로 한다. 제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지역정보화"를 "정보화"로 하며, 같은 항 제8호 중 "해소, 인터넷 중독"을 "해소 및 정보화 역기능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0호 중 "지역정보화"를 "정보화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1. 정보화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 방향
-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제6조의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「전자정부법」 제5조에 따른 전자정부기본계 획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.

제5조의 제목 "(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"을 "(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지역정보화위원회"를 "정보화위원회"를 "정보화위원회"로, "지역정보화 시행계획"을 "정보화 시행계획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 제7조제2항에 따라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"를 "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제7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"로 한다.

제6조의 제목 "(정보화위원회의 설치)"를 "(정보화위원회)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지역정보화 추진"을 "정보화 추진"으로, "지역정보화위원회"를 "정보화위원회"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"지역정보화"를 "정보화위원회"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"지역정보화"를 "정보화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"지역정보화"를 각각 "정보화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제7조에 따른 정보화책임관, 정보기술산업분야 및 공간정보분야 관련

실 · 국장

⑧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(원격영상회의를 포함한다)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.

제6조의2의 제목 "(정보화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)"를 "(위원의 이해충돌 방지)"로 한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7조(정보화책임관) ① 도지사는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 역할 및 정보화 시책의 총괄·조 정 등을 위하여 정보화책임관을 둔다.
 - ② 정보화책임관은 행정국장으로 하며,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.
 - 1. 정보화 시책·사업의 종합·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
 - 2. 정보화 정책·계획 등의 수립·추진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연계 ·조정
 - 3.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ㆍ조정 및 체계적 관리
 - 4.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
 - 5.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
 - 6.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・활용
 - 7.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
 - 8. 그 밖에 정보화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 - ③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의 장은 정보화책임관과 사

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

제3장의 제목 "지역정보화의 추진"을 "정보화의 추진"으로 한다.

제8조제2항 및 제3항 중 "지역정보화"를 각각 "정보화"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"지역정보화"를 "정보화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효율적인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"를 "필요한 경우 정보화"로 한다.

제10조제2항 중 "지역정보화"를 "정보화"로, "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"을 "정보통합센터를 설치"로 한다.

제4장의 제목 "정보화의 역기능 방지"를 "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등"으로 한다.

제15조제2항 중 "도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인터넷 중독"을 "인터넷 과의존"으로 한다.

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9조(포상) 도지사는 정보화 발전 및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 정되는 개인·단체 등에 대하여 「충청북도 포상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충청북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"「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조례」 제4조"를 "「충청북도 정 보화 조례」 제4조"로 한다.

- 제3조(경과조치)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수립·시행 중인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은 제4조및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충청북도 정보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으로 본다.
 -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충청북도 지역정보화위원회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충청북도 정보화위원회로 본다.
 -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충청북도 지역정보화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충청북도 정보화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햀 개 정 안 혅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조례 충청북도 정보화 조례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 제1조(목적) -----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 -- 정보화-----진하기 위하여 「국가정보화 기 | ---- 위하여 「지능정보화 기 본법, 및 「전자정부법,----본법」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----- 규정함으로써 적으로 한다.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 바지함---.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 제2조(정의) -----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· 2. (생략) 1. • 2. (현행과 같음) 3. "지역정보화"라 국가기관 또 3. "정보화"란 정보를 생산ㆍ유 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 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 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 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・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 주민생활 • 산업 • 복지 등 분 하는 것을 말한다. 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 •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 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. 4. "정보취약계층"이란 정보통신 4. -----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・

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, 농 어촌지역 주민, 장애인, <u>노령</u> 자 등을 말한다.

제3조(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 <u>칙)</u> 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 사"라 한다)는 <u>지역정보화</u>를 추 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.

1. ~ 5. (생략)

제2장 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

- 제4조(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) ① 도지사는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충청북도 지역정보화기 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되, 제6조에 따른 충청북도 지역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 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
 - 2. <u>지역정보화</u>의 목표와 전략

고령자, 북
한이탈주민, 결혼이민자 등으
로서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거
나 거주하는 자를
제3조 <u>(기본원칙)</u>
الا با الا
<u>정보화</u>
1. ~ 5. (현행과 같음)
제2장 <u>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</u>
<u>추진체계</u>
제4조 <u>(기본계획의 수립)</u> ①
<u>「전자정부</u>
법」 제5조의2에 따라 도의 정
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
<u>정보화 기본계</u>
회
<u>정보화위원회</u>
②
1. 정보화 기본방향 및 중장기
<u>발전 방향</u>
2. 정보화

- 3. ~ 7. (생략)
- 8. 정보격차 <u>해소, 인터넷 중독</u> 예방·해소
- 9. (생략)
- 10. 그 밖에 <u>지역정보화</u>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③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 제6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요청할 경우에는 국가 정보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부문계획을 작성・제출하여야 한다.
- 제5조(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 집 립·시행)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제6조에 따른 충청북도 지역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충청북도 지역정보화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한다.
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 제7조제2항에따라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.
- 제6조(정보화위원회의 설치) ① 제6조(정보화위원 지역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다음 <u>추진-----</u>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------

3. ~ 7. (현행과 같음)
8 <u>해소 및 정보화 역기</u>
<u></u>
9. (현행과 같음)
10 <u>정보화</u>
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
때에는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
제6조의 지능정보사회 종합계
획과 「전자정부법」 제5조에
따른 전자정부기본계획 등을 고
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.
세5조 <u>(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</u> ①
정보화위원회
<u>정보화 시행</u>
계획
② 「지능
정보화 기본법 제7조제2항에
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
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
네6조 <u>(정보화위원회)</u> ① <u>정보화</u>

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북 도 <u>지역정보화위원회(이하</u> "위 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- 1. · 2. (생략)
- 3. 그 밖에 <u>지역정보화</u>와 관련 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(생략)
-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 촉한다.
- 1. (생략)
- 2. 행정국장, 경제통상국장, 균 형건설국장
- 3. <u>지역정보화</u>에 관한 전문지식 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<u>지역정보화</u>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.
- ⑤ ~ ⑦ (생 략)

<u><신 설></u>

<u>정보화위원회</u>
<u>.</u>
1.·2. (현행과 같음)
3 정보화
0. <u>044</u>
② (현행과 같음)
③
<u>.</u>
1. (현행과 같음)
2. 제7조에 따른 정보화책임관,
정보기술산업분야 및 공간정
보분야 관련 실・국장
3. <u>정보화</u>
4
<u>정보화</u>
⑤ ~ ⑦ (현행과 같음)
⑧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
(원격영상회의를 포함한다)로
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

제6조의2(정보화위원회 위원의 이 제6조의2(위원의 이해충돌 방지) 해충돌 방지) ① ~ ③ (생 략) 제7조(정보화책임관) ① 도지사는 제7조(정보화책임관) ① 도지사는 지역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 립 · 시행과 지역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 임관(이하 "정보화책임관"이라 한다)을 행정국장으로 하며, 다 음 사항을 담당한다.

- 1. 정보화 시책·사업의 종합· 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
- 2. 정보화 정책・계획 등의 수 립 · 추진시 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과의 연계 · 조정
- 3. 정보자원의 획득·배분·이 용 등의 종합・조정 및 체계 적 관리
- 4.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 의 지원
- 5.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

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 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 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위원장 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.

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 른 지능정보화책임관 역할 및 정보화 시책의 총괄ㆍ조정 등을 위하여 정보화책임관을 둔다.

- ② 정보화책임관은 행정국장으 로 하며,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. 1. 정보화 시책·사업의 종합·
- 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
- 2. 정보화 정책 · 계획 등의 수 립ㆍ추진시 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과의 연계 · 조정
- 3. 정보자원의 획득・배분・이 용 등의 종합・조정 및 체계 적 관리
- 4.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 의 지원

의 해소

- 6.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· 활용
- 7.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 육
-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

제3장 <u>지역정보화의 추진</u> 제8조(분야별 정보화의 추진) ① 저 (생 략)

- ② 도지사는 <u>지역정보화</u>를 추진 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 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 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 하여야 한다.
- ③ 도지사는 <u>지역정보화</u>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 인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- 제9조(민간기관 등과의 협력) ① 저 도지사는 <u>지역정보화</u>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,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·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

<u>5. 정보문화의</u>	확산과	정보격차
의 해소		

- 6.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· <u>활용</u>
- 7.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8. 그 밖에 정보화 정책 추진을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③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 하려는 부서의 장은 정보화책임 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

제3장 정보화의 추진

세8조(분야별	정보화의	추진)	1
(현행과 같	음)		
②	<u>정보화</u>		
	. — — — — — —		
③	<u> 정보화</u>		
세9조(민간기			
<u>정</u>	<u>보화</u>		

할 수 있다.

- ② 도지사는 <u>효율적인 지역정보</u> <u>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</u>와 관련된 기관·단체 및 외국의 기관·단체·정부 등과 대외협 력을 추진할 수 있다.
- 제10조(정보통신망의 구축·운영 등) ① (생 략)
 - ② 도지사는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<u>지역정보</u> 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 여 <u>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</u>하 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4장 <u>정보화의 역기능 방지</u> 제15조(정보문화의 창달) ① (생략)

- ② 도지사는 <u>도민과 공무원에</u> 대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·교육·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- 제1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.

② 필요한 경우 정보화
제10조(정보통신망의 구축・운영
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
<u>정보화</u>
<u>정보통합센터를 설치</u>
제4장 <u>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등</u>
제15조(정보문화의 창달) ① (현
행과 같음)
② 인터넷 과의존
,
제19조(포상) 도지사는 정보화 발
전 및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
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・단체 등
에 대하여 「충청북도 포상주

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관련법령 발췌

- □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으로 전부개정 시행('22.7.21.)
 - 최근 우리 사회는 인공지능, 데이터, 5G 등 첨단기술의 혁신적 발전으로, 초연결·초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에 접어들고 있는바,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·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적 추진체계 구축과 기술혁신을 위한 규제체계 정비 필요.

□ 지능정보화 기본법

- 제6조(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) ①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효율적·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(이하 "종합계획"이라한다)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.
 - ② 종합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(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며, 「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특별법」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(이하 "전략위원회"라 한다)의심의를 거쳐 수립・확정한다.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- 제7조(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(이하 "실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제8조(지능정보화책임관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·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(이하 "지능정보화책임관"이라 한다)을 임명하여야 한다.
- 시행령 제6조(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) 법 제8조제1항에서 "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"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.
 - 1.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, 지원 및 평가

- 2.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총괄, 조정 지원 및 평가
- 3. 지능정보사회 정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 등과의 연계 조정
- 4.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
- 5.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의 체계적 작성 관리

□ 전자정부법

- 제5조(전자정부기본계획의 수립) 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전자정부의 구현·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등 의 기관별 계획을 종합하여 전자정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정부기본계획(이하 "전자정부기본계획"이라 한다)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전자정부 구현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
 - 2.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관련 법령 · 제도의 정비
 - 3.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 촉진
 - 4. 전자적 행정관리
 - 5.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확대 및 안전성 확보
 - 6.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 및 활용
 - 7. 정보자원의 통합·공동이용 및 효율적 관리
 - 8. 전자정부 표준화, 상호운용성 확보 및 공유서비스의 확대
 - 9.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과 성과 관리
 - 10.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업무 재설계
 - 11. 전자정부의 국제협력
 - 12. 그 밖에 정보화인력의 양성 등 전자정부의 구현 · 운영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
 -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·시행할 때에는 전자정부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한다. <개정 2020. 6. 9.>

- 제5조의2(기관별 계획의 수립 및 점검)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5년마다 해당 기관의 전자정부의 구현·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(이하 "기관별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시행령 제4조의2(기관별 계획의 수립)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기관별 계획(이하 "기관별 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할 때에는 재원조달 방안 및 계획 수립 이전 5년간 기관별 계획의 추진 성과를 고려하여야 한다.
 - ② 기관별 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기관의 사무와 관련된 사항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관별 계획을 소속 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별 계획과 함께 기관별 계획을 수립하는 해의 6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55조(지역정보통합센터 설립·운영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정보화를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·운영할 수 있고, 필요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·운영할 수 있다

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(비용추계서 작성대상)제4항 제1호

○ 사 유

- 이 조례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이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별도의 추가 예산이 발생하지 않음.